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 평가 기준(안) -

2026. 10.



I 평가 개요

□ 선정 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 (1단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운영기관별 협상대상자 배분
- * 심의 후 2단계 협상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심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2단계) 총괄·운영기관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본 사업의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계법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선정 방법

- (1단계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100점(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90점)을 배점으로 고득점 순으로 상위 10개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운영기관별 협상대상자 배분

발표 평가 방법

① 발표평가 : 사업내용을 PPT 또는 PDF로 요약하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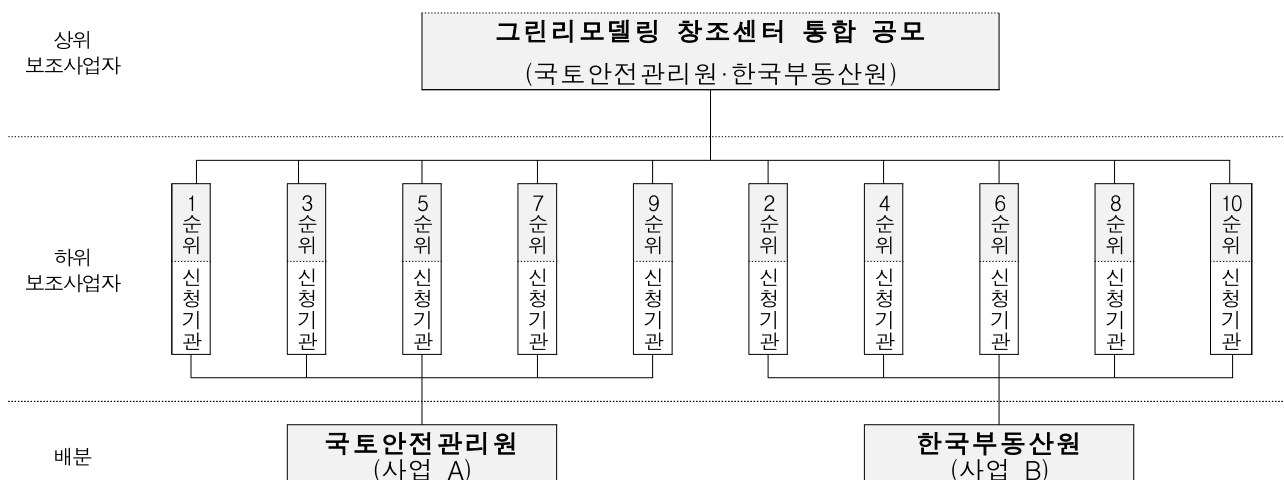
② 발표시간 : **50분 이내(발표 30분, 질의문답 20분)**

* 공모 신청기관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표자료를 재요구 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공모 신청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신청기관의 요구에 의한 발표순서는 변동은 없음

- 협상대상자는 **평균점수가 65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로 한정
 -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 신청기관이 10개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선정 불가
- 평균점수가 동일한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정성평가 총점이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실행], [사업수행 계획] 등 배점이 높은 순으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공동 운영기관 간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가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운영기관별 각 5개씩 배분

《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보조사업자 배분 예시 》



※ 협상대상자에 대한 운영기관 배분은 1단계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협상대상자는 운영기관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2단계 평가방법) 운영기관은 배분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보조사업자(수행기관)를 최종 선정

*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총괄·운영기관과 선순위 협상대상자 간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별도의 협상은 생략
- 협상내용은 의무화 기술지원 대상 건물군 배정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예산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을 포기한 경우 또는 주요 협상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봄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총괄·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음
- (재공모)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이 10개에 미달하는 경우, 관계규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등)에 따라 미선정 기관 수의 범위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

Ⅱ 평가 기준 (1단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 경영상태 · 재무구조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5
			· 투입인력 - 사업 투입 인력 및 규모	5
		소 계 (①)		10
정성평가	5	기관 역량	· 수행기관 역량 평가 - 제안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 과업 전문분야에 따른 조직 구성의 유기성 - 참여기관의 신뢰도 및 안전성	5
	10	과업 이해도	· 정책 이해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	5
			· 과업 이해도 - 기술지원 과업 목표의 정합성 - 기술지원 과업 요구사항 분석의 구체성	5
	20	사업 수행계획	· 추진방향·전략의 적정성 - 사업목표와 세부 과업 간 연계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대상 및 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적합성 - 제안 요구사항별 실행 방안의 명확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10
			· 추진체계의 타당성 - 과업 단계별, 참여기관별 수행역할 및 협력지원 체계 구성의 적정성	5
			· 추진일정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세부 요구사항과 제안서 내용의 부합성 - 과업내용을 고려한 추진일정 계획의 합리성	5
	25	사업실행	·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절차 - 실행방법 및 수행절차의 구체성·명확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 과업별 투입인력·자원의 적정성 - 투입인력 구성 및 역량의 우수성 - 투입장비의 전문성	5
			· 사업추진 과정의 운영·협업 및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 운영기관, 의무화 대상기관, 공동수행 기관간 협업·협의 절차의 구체성	5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 사업수행계획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수행역량 -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점검 및 환류방안의 적정성 - 일정지연 발생 시 대응 및 만회계획의 구체성	5
	5	사업성과	· 사업성과품 계획의 완성도 및 활용성 - 제안된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완성도 - 사업목적 및 세부 과업의 부합성 - 성과품의 전문성 및 정확성, 품질 수준 - 성과품의 활용성 및 적용 가능성	5
	15	사업관리	· 사업 관리의 타당성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단계별 일정 및 진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단계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파악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5
			· 관련 기술이전 우수성 - 보유한 신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사업 관계자 교육 계획 등	5
			· 운영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및 인력 관리 방안 적정성 - 보안자료 관리방안	5
	10	예산 및 부정수급 예방계획	·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 단계 및 참여기관별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사업기간 및 추진단계를 고려한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 국고보조사업 이해도 및 부정수급 예방방안 -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정산 업무 이해도 - 지출 증빙자료 관리 등 부정수급 취약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 시 보고·시정·환수 등 대응절차의 구체성	5
	소 계 (②)			
합 계 (①+②)				100

※ 정량평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평가

1 평가 배점표 세부 사항 [정량평가 - 신청기관의 경영 상태]

○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최대 5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0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공고일 기준 12개월 전까지 확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본 사업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사업비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 \text{산식} = \{(A\text{사 점수} \times A\text{사 사업비 지분율}) + (B\text{사 점수} \times B\text{사 사업비 지분율})\}$$

※ (예시) A사(주관기관(5점), 사업비 60%)·B사(공동기관(3점) 사업비 40%)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 $\{(5\text{점} \times 0.6) + (3\text{점} \times 0.4)\} = 3.0 + 1.2 = 4.2\text{점}$

2 평가 배점표 세부 사항 (정량평가 - 사업 투입 인력 규모)

○ (평가자료) 참여인력현황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 (사업 투입인력 규모 평가) 최대 5점

구분	사업 투입인력 평가점수				
	16점 이상	13점 이상 16점 미만	10점 이상 13점 미만	7점 이상 10점 미만	7점 미만
배점	5	4	3	2	1

- 사업 투입인력 점수는 참여인력에 환산계수를 곱하여 합산

구분	‘특급’이상	‘고급’	‘중급’	‘중급’미만
환산계수	1.0	0.8	0.6	0.0

1.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건축" 또는 "기계-공조냉동 및 설비"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등급과 경력으로 한정함
3.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건설" 또는 "설비" 부문 등급과 경력으로 한정함
4. 실제 참여여부가 의심되는 투입인력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5. 참여하는 각 기관의 인력 전체 합계로 산정함
6. 참여 필수인원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1인), 구조안전전문가(1인)는 투입인력 규모 평가에서 제외함
7. 참여인력은 본 사업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소속인 자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관련 증빙으로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예시) 총 18인 투입 (특급기술자 3인, 고급 기술자 5인, 중급기술자 10인)

☞ 사업 투입인력 평가점수(13점)

$$(13점) = (3인 \times 1.0점) + (5인 \times 0.8점) + (10인 \times 0.6점) = (3점) + (4점) + (6점)$$

☞ 사업 투입인력 규모평가 = (4점)

□ 평가 배점표 세부 사항 (정성평가 평가척도)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10점	10	8	6	4	2
5점	5	4	3	2	1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평가위원 채점표

사업신청기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점수
정량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10)	경영상태·재무구조	5	5	4	3	2		
		투입인력	5	5	4	3	2	1	
정성 평가 (90)	기관역량 (5)	수행기관 역량 평가	5	5	4	3	2	1	
	과업이해도 (10)	정책 이해도	5	5	4	3	2	1	
		과업 이해도	5	5	4	3	2	1	
	사업수행 계획 (20)	추진방향·전략의 적정성	10	10	8	6	4	2	
		추진체계의 타당성	5	5	4	3	2	1	
		추진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사업실행 (25)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절차	10	10	8	6	4	2	
		과업별 투입인력·자원의 적정성	5	5	4	3	2	1	
		사업추진 과정의 운영·협업 및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5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수행역량	5	5	4	3	2	1	
	사업성과 (5)	사업성과품 계획의 완성도 및 활용성	5	5	4	3	2	1	
	사업관리 (15)	사업 관리의 타당성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관련 기술이전 우수성	5	5	4	3	2	1	
		운영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예산 및 부정수급 예방계획 (10)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국고보조사업 이해도 및 부정수급 예방방안	5	5	4	3	2	1	
합 계			100						

본 평가위원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 ○ (인)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선정위원회 평가결과표

기관명	심사위원 채점 결과							총점 (평균)	결 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									
□□□									
▽▽▽									

※ 심사위원은 편의상 ‘가’, ‘나’, ‘다’, ‘라’.....로 표기

※ 평균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최상’과 ‘최하’를 제외한 점수의 합계 평균값

※ 결과란에는 ‘적합’과 ‘부적합’으로 표시

본 평가위원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장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 귀하

평가위원 윤리서약서

본인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2.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3. 평가대상 사업책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기관에 최근 1년 동안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 귀하